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용산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986호**      2018. 10. 1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125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행정정보 → 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5510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공 람											



## 조 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125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성 장 현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 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용산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적용범위 등(안 제7조 ~ 제9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